

2000년도 교수해외파견 연구지원
사업 공모 안내

1 9 9 9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국제교류지원팀)

목 차

I. 목 적	1
II. 사업내용		
1. 연구과견	1
2. 강의과견	3
3. 신청마감	3
4. 신청제한	3
5. 경비지원내역	4
III. 사후관리		
1. 관리운영	4
2. 선정취소	6
IV. 추진일정	6

<제1호서식> 해외과견 연구교수 총괄추천서
<제2호서식> 해외과견 연구교수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2000년도 교수해외파견 연구지원 사업 공모

I. 목 적

- 교수의 연구자질 향상 도모
- 선진학문 및 기술도입 촉진
- 연구의 국제화를 통한 인적교류 촉진 및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기여

II. 사업내용

1. 연구파견

가. 목 적 : 국가 및 학문발전을 위해 국외에서의 연구수행이 긴요한 분야의 연구와 현행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분야 지원

나. 신청방법 : 대학 총·학장이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과제를 선발하여 별첨 서식에 의거 일괄 추천하되 해외에서의 연구수행이란 점을 감안하여 추천함

- 추천조건: 연구파견자로 선정되어 6개월 이상 출국하는 연구자는 “파견 근무”로 처리

- 신청절차: 연구계획서 작성 → 파견예정기관과 협의 → 총·학장 추천

다. 연구기관과 연구과제의 선정

- 연구과제는 연구파견기관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공동관심 분야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파견기관은 총·학장의 공식적인 서신에 의한 공식적 접촉을 권장함.

- 파견기관은 현 소속대학과 교류협정 체결대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G7국가, 특히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파견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선정율을 상향 조정하여 선정

라. 신청자격

-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간 해외 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연령제한 없음)
- '95. 1. 1일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재 사실이 없는 사람

마. 파견기간 : 6개월 또는 1년

- 파견예정인원(선정비율 10%이상 유지)을 확정하여 1년파견자와는 별도로 심사함

바. 지원분야 : 전학문분야

사. 제출서류 :

- 소속기관장의 총괄추천서 (제1호 서식)
- 지원신청서 5부 (소정양식; 원본 1부, 사본 4부)
- 연구계획관련 교환서신 일체 (각각의 지원신청서에 첨부)

아. 심사 및 선정

- 요건심사 : 추천기준 미달자 등 적격여부 심사
- 전공심사 : 연구계획서 내용에 의한 전공심사 (패널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비고
1. 연구의 필요성	기존연구와의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 동향과 비교를 통한 타당성	100	
2. 외국에서의 연구 추진의 타당성	연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야 할 당위성, 적합성	100	
3. 연구계획(방법)의 논리성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방법간의 연계성, 논리성, 구체성	100	
4.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연구자의 연구업적등으로 보아 신청과제의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100	
5. 연구후 활용기회 정도는?	연구자의 연령을 감안할때 연구후 국내 학문과의 접목 및 후학지도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0	
6. 학문발전 및 실용에의 기여도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의 정도	100	
계		600	

- 선정 : 전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문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2. 강의파견

가. 목 적 : 한국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외국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한국학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파견

나. 신청절차 : 파견예정기관과 협의 → 초청장 입수 → 파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작성 → 소속 총·학장 추천

- 추천조건 : 연구파견자로 선정되어 6개월 이상 출국하는 연구자는 “파견근무”로 처리

다. 선정 : 해외한국학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라. 신청자격

- 소속대학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해외파견 및 강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대학(연구소등 포함)에서 강의를 위하여 초청받는 자로서 강의일정이 확정된 자 (강의일정 및 증빙할 만한 서류제출)
- 파견국 언어능통자

마. 파견기간 : 6개월 ~ 1년 (실제 한국학 강의기간)

바. 지원신청분야 :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분야

3. 신청마감 : 2000. 1. 31(월)

4. 신청 제한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고 소정기한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연구결과 평가에서 하위의 등급 (C,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일정기간 경과되지 않은 자
 - C급 : 1년, D급 : 3년
-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고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 자
- 기타 추천기준 미적격자

5. 경비지원 내역

구 분	연구파견	강의파견
지원내역	항 공 료 준 비 금 체 재 비	항 공 료 준 비 금 체 재 비(\$2,200이내/월)
지급기준	°항공료 : 정부예산 편성기준 국외항공요금(왕복) 적용 °준비금 : USD500 °체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파견은 공무원 특별훈련비 지급기준 적용 · 강의파견은 재단 자체의 지급기준액을 적용. 단, 강의파견시 국가별 직급별 지원액이 차등이 있는 바, 일부직급의 경우 연구파견 체재비 지원액 이하일 경우 연구파견 체재비 적용 지원 	
지원방법	°1년 파견자에 한하여 2회로 나누어 파견자 소속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구조로 송금함	

Ⅲ. 사후관리

1. 관리운영

- 출국 : 선정통보일로부터 2000년말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
- 일시귀국 :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자부담으로 함.
 -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기간 : 연간 15일.
- 각종 보고서 제출 : 모든 보고서는 국내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제출함
 - 체재지 도착보고서 : 연수국 도착 즉시
 - 중간보고서 : 출국후 5개월 경과시

- 귀국보고서 : 귀국후 1개월이내
- 연수결과보고서 : 연수결과는 연구논문으로 작성하여 연수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제출

○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자료》

- 연구결과논문 (학회지 투고접수증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사본 첨부)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논문초록

※ 위의 자료는 E-mail(result@ms.krf.or.kr) 또는 디스켓(한글버전 3.0 이상, MS 워드로 작성)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결과 논문의 학술지 게재 의무화》

- 연구결과 논문은 연수종료후 6개월 이내에 현지국의 권위있는 학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하고, 연수종료후 2년 이내 게재(또는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함.
연구결과 논문을 해당 전문학술지에 게재·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쇄본 2부 제출)
- 연구결과 논문을 연수종료후 1년 이내에 현지국의 권위있는 학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을 경우는 연수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교육부 및 학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함. 또한, 투고하였으나 연수종료후 2년 이내 현지국의 권위있는 학술지 또는 국외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을 경우는 재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며, 평가결과 C등급은 향후 1년간, D등급은 향후 3년간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함.
-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국문표기>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

<영문표기> "The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0-○○○○)"

○ 강의파견

《결과보고서 제출자료》

- 파견대학, 강좌명, 강의제목, 강의계획서, 강의내용, 수강인원, 방학기간, 파견대학의 지원사항 (또는 협력사항), 현지 주민 및 교포의 관심도와 지원사항, 교재 및 자료지원에 관한 사항, 파견대학의 한국학관련 실태 및 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2부를 제출
- 강의시 사용된 교재 및 학습자료 등 1부

2. 선정취소

- 선정자중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해당자)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이 종료된 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자
- 출국기한 (2000년말)까지 미출국자는 자동 선정취소됨

IV. 추진일정

-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1999. 12. 20 ~ 2000. 1. 31
- 신청서 접수보고 및 심사 : 2000. 2. 1 ~ 3. 15
- 파견후보자 선정 : 2000. 3. 20
- 출국 : 선정통보일로 부터 ~ 2000. 12월말까지

사업안내 및 문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지원팀 ☎ 02) 3460-5604 FAX 02) 3460-5578
--

해 외 파 견 연 구 교 수 총 괄 추 천 서

대학명 :

연번	학문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파견 종류	파견희망국 (연구기관명)	파견 기간	출국예정일	비고
	()		-					

* 신청공문은 소속기관의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학과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 모두 선발될 경우 강의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 학문분야란중 ()밖은 연구학문분야 (어문·인문·사회·이학·공학·의약학·농학·수해양·예체능)을 표시하고 ()내에는 세부분야(미시경제·인공지능 등)를 표시
- 파견종류에서 “연구”, “강의”중 선택
- 파견기간은 6개월, 1년 중 선택
- 출국예정일은 2000년도 예산운용에 필요하니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월·일을 정확히 기재토록 함